

제42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9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8)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2)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

상정된 안건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9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9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9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9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9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9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9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9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9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9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9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8)	9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2)	9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9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10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10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10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확인할 게 좀 있어서 확인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소위원장 이원택** 누구한테요?**○전종덕 위원** 전문위원실에요.

지난번에 논의했던 양곡법(대안)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낸 것 제가 봤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논의 안 된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그때 논의된 것인지 속기록 확인을 좀 요청드리려고요.

신구 대조로 볼 수도 있고 3페이지에 보면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과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양곡 재배면적 관리 규정 신설' 이것은 논의된 바가 없고 어떤 의원도 발의한 내용이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논의했는지 속기록 확인하셔 가지고 이후에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마 수정의견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회의는 지난주 목요일 심사에 이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자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확인하고 또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이랄까요, 저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이 심사되고 난 이후에 사실 우리 양곡관리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의 핵심적 내용이 밖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허위로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농민단체들로부터 우리 위원님들 문자도 받고 그렇게 됐는데, 또 저희가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내는 과정과 사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민을 분열시키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또 이 법안은 사실 이미 1차, 2차, 3차의 심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 쟁점과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밖으로 왜곡 전파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에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유감을 표현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의 내용을 밖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신가요?

○이만희 위원 저는 없습니다.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 제가 확인만 하고요.

전달하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곡법 심사 과정의 핵심 내용과 이런 것을 밖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신 분이 계시냐고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안 계시고……

○전종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을 무슨 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이만희 위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위원장님 입장을 표명하시면 되지요.

○이만희 위원 소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세요!

법안심사 과정은 모두 공개리에 하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다 보고 있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공개리에 하는 건 맞고요.

○이만희 위원 아니, 공개리에 하는 건 여기에는 누구도 제한 없이 심사 과정을,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의원 보좌관들 그리고 언론 주요 기관들 다 들어와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공개리에 하는 거예요.

아니, 뭐를 왜곡 전달하고 뭐가 유감이라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저희가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 후퇴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근거와 내용을 보면 타당하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과정에 왜곡이나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보좌관님들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좀 서운합니다. 그런데 있다면 제가 위원장이고, 저한테 얘기해도 되고 또 그런 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또 확인해도 되고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전제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농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언론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무슨 논의 과정을 설명을 한다든가 저한테 문의가 왔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사실은 없다는 걸 먼저 전제를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사실은 이 법안의 모든 과정 그리고 국회에서의 모든 논의 과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만약에 양곡법의 심의 과정을 왜곡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거나 보도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경위를 물어보고 유감을 표시하는 게 맞지 논의한 위원들 앉혀 놓고 뭐를 유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제가……

○이만희 위원 아니, 논의 과정 자체를 우리가 밀실에서 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뭐를 저희들한테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만희 위원님이나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유감을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예를 들다면 농민 간의 분열 또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것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만희 위원 어쨌든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말씀 다 하셨으니까……

○이만희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발언 중에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저는, 아마 이게 속기록에 기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국회의 모든 회의나 논의 과정은 공개리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곡 보도하거나 잘못했으면 그분들한테 가서 항의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논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이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마치 농민과 위원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이간질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이렇게 된 부분들은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속기록에 있으면 그 부분들은 앞으로 좀 교정을 해서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전종덕 위원 저도……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이요, 발언권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법안심사 과정은 공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가 되는 거지요. 그걸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게 공유되는, 알려지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했던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과정에 대한, 저희들이 좀 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소위 위원장이고 그때 심사 과정에 소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 주거나 또는 왜곡이 있었으면 전언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측면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자료는 다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왜곡해서 허위 제공했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분열을 일으켰고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이건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은 해당 단위가 판단을 하고 그 책임도 그 단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셨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할을 하시면 될 문제지 마치 위원들에게 색출하듯이, 십자가 밟기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강명구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당연히 공개되는 거고 공개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는 거고요. 다만 왜곡 전달되는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왜곡 전달했다는 것은 위원들이 전달했다는 뜻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잠깐만요. 제 말 들으세요.

왜곡 전달한 측면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지점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강명구 위원님.

○**강명구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외부에 왜곡 전달하신 분이 계시냐’, ‘민주당 위원님들, 하신 분 계시냐’, ‘여기 국민의힘 위원님들, 왜곡 전달하신 분 계시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곡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지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기 법안소위 회의장 안에서 ‘국민의힘 당신들, 왜곡 보도해서 다른 데로 전달했느냐’라고 추궁하시는 것은요…… 위원장님, 여기 오늘 소위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소위 위원장님이 어떻게 발언하셨는지 짐작은 되는데 그런 내용 가지고 사과를 요구하시는 게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날 소위 끝나고 그다음 날부터 문자폭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진짜 조직적으로 문자폭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아니, 법안소위 내용이 아직 대외적으로 어떤 자료를 통해서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문구도 똑같아요—온 것은 누군가에게 전달이 잘못, 왜곡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해명자료도 만들고 설명자료도 만들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SNS에도 올리고 하지만 마치 법안소위 끝나자마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은 누군가는, 여기서 전달이 됐는데 그게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 돼서 전달이 됐다 이런 측면을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굳이 그걸 가지고 목소리 높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강명구 위원** 아니, 그것을 여기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추궁하듯이, 의심하듯이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금주 위원** 표현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이요, 또 다른 발언……

○**강명구 위원** 사과하세요. 왜 제가 그런 의심을 받아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요?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고요. 이것 이제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위원** 사과하십시오, 이것은.

○**윤준병 위원** 저는 작금의 소위 의결된 내용과 관련해서 외부에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전달된 것 이것 확인하는 작업은, 있느냐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사과해야 될 사안 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내용을 촉발시킨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이 사과를 해야 될 사안 아니에요? 왜 이게……

○**강명구 위원** 그런데 윤준병 위원님, 그것을 제가 왜 의심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윤준병 위원** 아니, 의심을 받는 게 아니고 위원회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강명구 위원** 아니, 왜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전달하셨느냐라고 내가 추궁을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요?

○**윤준병 위원** 들어 보세요.

○**임미애 위원** 발언 중이니까 듣고서 말씀하시지요.

○**윤준병 위원** 내용을 특정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중에 누군가가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걸 가지고 의심을 받아야 되느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하기 위한 위원장으로서 일련의 기본적인 확인 작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하시고 빨리 법안소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일어나시지요.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소위인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위원장한테 무슨 추궁받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까?

○**강명구 위원** 아니, ‘민주당에서 다 전달해 놓고 저희들한테 덮어씌우는 것 아니에요?’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준병 위원** 물어보세요.

○**강명구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법안소위 안에서……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건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윤준병 위원**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면 될 일이지 뭘 그런 것 가지고……

○**문금주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강 위원님. 그건 아니니까……

○**이만희 위원** 간사님께서 이것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안법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자, 이렇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아니, 유감을……

○**이만희 위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저거는 안 하시는데……

(일부 위원 퇴장)

○**소위원장 이원택** 법안심사를 또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강명구 위원께서…… 저는 이게 밖으로 왜곡·허위, 왜곡되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그 유감을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여기 위원님들께 제가 혹시 그런 측면이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건 저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유감을 표현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나 우리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과 내용이 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유감 표명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것이 원래 본래의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저희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소위 때 있었던 일을 외부에 유출한 위원님이 있으시냐라고 물으니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없다라고 답을 하셨고 우리는 답을 안 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했는 거 아니냐라고 추궁하듯이 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불쾌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나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원장께서 표현의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농안법 심사 이후에도 또 유사한 일이 있을 텐데, 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짐작을 하신다면 그냥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좋겠다.

그리고 소위원장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소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그 말씀을 안 남길 수도 없다는 입장도 일종 이해는 됩니다, 상황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렇지만 추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쪽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외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그래서 좀 적절치 않은 걸 유감을 표명했으니까요.

○**정희용 위원** 그러면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들어오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잠시 갔다 오시지요,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강형석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식품부차관입니다.

오늘까지 3개 법이 의결이 됐고요.

마지막 네 번째 법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법을 위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농업인 관점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내용 중에 농(수)산물가격안정제 부분이 해양수산부와도 관련이 있어 해양수산부 서정호 수산정책관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관련 내용 심의 때 해양수산부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차관이 오시기로 했는데 해양법안소위원회가 이 옆에서 열려서 차관이 아마 그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8)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2)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10시27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1항부터 17항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심사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고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재의요구된 종전 대안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 1번, 법률의 목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수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 간단히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현행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번 농림업관측 분석범위 명확화에 관한 내용은 종전 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나 작년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만희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만희 의원님 안과 또 이와 유사한 내용인 정희용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요량 조사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9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3번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종전 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정 심의 기구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는 내용이고 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의사항 중에 TRQ와 할당관세에 관한 사항은 뒤의 바로 4번에서 나오는 무역정책심의회 심의사항으로 다루시면 어떨까 해서 22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무역정책심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이원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현재 훈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보다 더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아서 현재 훈령에서 정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39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예시가격 결정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은 상한가격 예시가 생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농가 경영상황이라는 법문의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47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유통조절명령 심의 의무화는 유통조절명령 발령 시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유통조절명령 발령에 그래도 생산자의 의견을 더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유통조절명령이 생산자 등의 요청에 따라 발령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고, 또 개정안처럼 사전 심의를 의무화할 경우 유통조절명령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7번 계약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정안의 ‘손실보전’이라는 표현이 국가의 원인행위에 따른 손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부적합하다고 보이므로 손실보전이라는 표현 대신에 ‘손실 등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 또 계약생산과 계약출하를 모두 계약거래라는 개념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57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농(수)산물의 수급계획 및 수급 안정에 관한 개정안 11건은 모두 과잉 생산 또는 수급 불안 시 수매 등 생산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각 개정안별로 수급관리계획 및 수급안정대책에 관한 사안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페이지에서 보시듯이 1안과 2안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나눌 만큼 내용들이 좀 상이한 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개정안들의 내용이 수급 안정을 계획적으로 도모하고 또 생산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내용을 적절한 내용으로 통합 조정한 수정의견을 87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또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또 수급 불안 시 수매 등 생산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은 생산자에게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어가 소득 및 생산 기반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농업 생산구조의 왜곡 및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보완으로 기준가격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를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하도록 수정하고, 또 시장가격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 산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도매시장이나 산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사한 평균가격으로 하도록 하며, 또 양곡관리법의 가격안정제도를 이 법에서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또 그 대

상 품목에 수산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산물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106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10번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종전 대안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가격안정제도의 대상에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를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각각 설치하고 또 개정안에 있는 심의사항 중 기준가격과 적정 재배면적의 관측 및 추계에 관한 사항은 정책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낫다고 보아 이러한 수정의견을 115페이지부터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 추가에 관한 내용은 앞서 심사하신 결과에 따라 수용하신 제도개선 사항을 이 기금의 용도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산물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있는데 수산물은 농안기금의 지출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산발전기금에 관한 별도의 개정안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1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비축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사후 관리 대상을 수입비축사업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비축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129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부칙에 관해서는 별도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경우 준비기간에 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시는 게 어떨까요하고요. 또 수산물의 경우는 관련 통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농산물보다는 좀 더 긴 유예기간을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대부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는데 저희 대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법률의 목적 수정은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조문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림업관측 분석범위 명확화에서도 저희들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법안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조문 페이지는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농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면서 약간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은 39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농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3항 3호에 보면 ‘학계 및 농산물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무역정책심의위원회 이기 때문에 ‘학계 및 농산물 관련 무역업계에서’라고 좀 특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입니다.

예시가격 결정 제도 개선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의 유통조절명령 심의 의무화입니다. 여기서도 현행 유지하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조문은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계약생산 지원입니다.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지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4항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자단체 등에게 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까지만 하고 사이에 있는 ‘계약 이행에 따른’은 빼는 게 저희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이행은 생산자와 그 계약을 한 생산자단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이행은 본인들이 책임질 일들입니다. 물론 책임을 진다면 기금 등을 통해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계약 이행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정부가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뺏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의 수급계획 및 수급 안정입니다. 여기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면서 대안을 약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문은 87페이지부터입니다.

88페이지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5조 3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시·도 농산물 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수급계획을 마련할 때는 시·도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돼 있고 또 시·도는 이행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량이 아니라 의무규정을 둬야 되고요. 다만 단서규정을 둬서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 재배면적이 적거나 재배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등 신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조문은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추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조문은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수입비축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조문은 129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해수부 와 있지요? 해수부 국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입니다.

저희는 여타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하신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수산물가격안정제도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외 사례가 좀 없고.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가능 품목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하고 또 기준가격 설정이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단서조항을 둬 가지고 16조의3과 16조의5 개정 내용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유예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조문별로 안 하고 그냥 질의……

○소위원장 이원택 통상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고 조문 심사 들어갔는데 조문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정희용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정희용 위원 우리 농업 4법 중에 마지막 법에 대한, ‘마지막 법’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네 번째로 법안소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세 법 심사할 때 제가 늘 차관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먼저 질문드리는 게 진행상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의요구될 때하고 지금 정부 측에서 수용한 수정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차관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그겁니다. 정부가 가격안정제도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안에는 시장가격을 고려하도록 했고요. 그 시장가격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시장가격을 고려한 품목 중심으로 품목이 쓰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평균가격으로 했고요. 보전할 수 있는 가격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 정도로 낮췄고요. 그리고 앞에서 재배면적 조절이라든지 수급계획 이런 것들을 더 집어넣어서 좀 더 안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달라진 것이 첫 번째는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두 번째는 기준가격을 설정할 때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비, 자가노동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게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정희용 위원** 그리고 뒤의 의무 이행 관련해서 차등 지급 이런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것도 저희들이 새로 신설한 이유는 농업인들이 좀 더 참여하셔서 수급 불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 세 가지 부분이 주요한 차이점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정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지난번에 양곡법 심의하면서 가격안정제도 관련해서 저는 양곡 관련한 가격안정제도를 양곡법에 둬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공정가격(기준가격) 문제는 농안법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니까 106페이지에 전문위원 수정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양곡법에서 제안됐던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한 가격 안정제 내용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정의견이라면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문구를 매끄럽게 하고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안은 양곡법이나 지난번 농안법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농안법 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내용으로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수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양곡법에 제출됐던 가격안정제를 포함해서 논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그리고 기준가격 관련해서는 어떤 의원도 이런 법안을 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제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으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내려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일단 이렇게 안을 제시는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따로 의견이 있으시면 아마 내용이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그때 양곡법 심의에서도 사실 양곡법의 핵심 사항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의 수급 조절, 양곡의 수급 조절과 가격이 중요한 문제인데, 또 양곡은 양곡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양곡법에 가격안정제를 둬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곡과 농산물 포함해서 농안법으로 올릴 때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법이 추구했던 기본정신과 또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법안이 제출돼야 되는데 수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내용이 지금

제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이 수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지난번에 양곡법도 그렇고 농안법도 가격을 정할 때 공정가격(기준 가격)을 정할 때는 평년가격 플러스 생산비 플러스 수급 조절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그 비용을 가격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빠지고 그보다 훨씬 축소된 내용으로 이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의 질의 중에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성이 들어간 수정의견이고 그 부분이야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도 농안법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냈지만 저는 사실 가격과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올라와 있는 농안법의 경우는 가격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농민들에게 굉장히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44쪽의 예시가격 결정 제도 개선에서 저는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의무화 이 정도를 냈는데 상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한가격을 넘어섰을 때, 예를 들면 배춧값이 너무, 소비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에 정부가 상한가격을 제시하면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가 구조가 워낙 고령화되어 있고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이마다 보니 대체로 포전거래가 이루어지고 포전거래가 이루어지면 산지 수집상이 인력과 기계, 장비를 모두 가지고 들어가고 또 생육 말기에 되면 생육 관리까지 하는 게 지금 현장인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배추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소비자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책정한다고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상한가격을 설정하면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격에 제한을 두고, 뭐 수입을 하겠다는 건지 메커니즘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상한가격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빠졌고요. 원래 예시가격은 채소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농업인들께서 내가 이거를 심어야 되는데 이거를 심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니까 심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주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한가격이 오는 건 맞지 않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상한가격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정책 수단은 이 조항에 보면 소비자 보호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시책은 쿠폰 발행이라도 하지만 실제 시책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상한가격은 이 법에는 제안돼 있지만 수정안에는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격안정제도에서 수입안정보험이라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등락폭이 워낙 심하고 실제로 비용은 굉장히 높고 시장가격을 통해서 이 비용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니 농가는 밭작물 재배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지만 이걸 통해서 농가소득을 일정하게 보전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격안정제도에 대한 욕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 소규모, 소농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것인가를 보면 구조적으로 저희 공약에도 경영이양 은퇴제를 대폭 확대하자. 그래서 노후에 고령농들이 내가 이러다가 밭고랑 이고 죽겠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경영에서 은퇴를 하고 싶은 경우에 은퇴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경영이양 은퇴직불제가 과거에 시행되고 있던 것을 대폭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공약 설계가 되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가격안정제도가 도입이 되면 한쪽의 정책은 고령농의, 소농의 은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가 되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상태로 경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제도가 설계가 되고 법이 그렇게 정비가 된다면 두 개의 정책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첫 번째로 가격안정제와 수입보험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제는 미국에 의하면 PLC 비슷한 수준이고요. 우리 수입안정보험은 미국의 농작물보험입니다. 미국은 PLC를 받더라도 수입보험은 그대로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보험을—수입보험은 더 규모가 큅니다—받게 되면 정부에서 받은 PLC를 빼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두 개는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다, 제도의 설계상. 하나는 가격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고, 특히 미국의 PLC는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 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PLC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는 수입보험을 선택합니다. 하여튼 그런 제도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의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은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정할 때 평균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채소의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엄청난 가격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고려돼 있기 때문에 상쇄관계는 있을지는 몰라도 크게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임미애 위원 미국의 경우는 PLC하고 안정보험하고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나 조건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같은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제가 알기에는 수입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 규모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 그거는…… 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로 그런 방식으로 이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거는 아니고요. 미국은 PLC가 있고 ARC가 있고요. 2개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민간보험인 작물보험에 있고요.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고요.

미국은 소농이 들 수 있는 NAP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우선 80만 불 이상 그거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대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있지만……

○**임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로 선택형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가격안정제는 필수고요, 해드리는 거고. 거기에 PLC의 평균가격이 좀 낮다, 나는 더 소득을 보장받고 싶다고 하면 수입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개를 보완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수정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5명, 다 합쳐 보면 한…… 나머지는 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는 얼마 정도를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숫자는 15명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 자격을 누가 할 것인지를 거기에 대충 정해 놨습니다,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평균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조사한 가격,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가격 이렇게 해 놨단 말이지요. 여기서 의미하는 기준과 가격은 어떤 수단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를 들면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가격이 얼마나 할 때 보통은 가락시장 가격을 씁니다.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가격을 쓰는 게 아니라 수확기의 가격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만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각 품목별로 정하는 방식과 기준이 다 다르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품목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적다 그러면 다른 대체 시장을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피해보전직불제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소요되는 기금 자체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산은 그 기준가격을 얼마나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 경영비랑 플러스 자가노력 경영비를 했을 때……

○**이만희 위원** 여기는 지금 양곡까지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양곡도 포함됩니다.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전체 예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과거 사례를 비춰 보면, 한 10년 정도를 비춰

보면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21년, 22년에 한 3000억, 4000억씩 나갑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지금 소요되는, 우리가 농안기금을 보통 2조 한 3000억 정도를 올해도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도 예상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추계는 지금 대충 하신 건지 물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 채소로 할 경우에는 400억, 과일을 포함시킨다면 연 2000억까지, 평균적으로 드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았다 낮았다 하니까 평균적으로 2000억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것보다는 충분히 더 들어가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대부분 다 대통령령 아니면 농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구성을 하실 때도 국회와 긴밀하게, 위원들한테 내용도 알려 주시고 저희들 의견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조문 심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에 있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정부 측이 동의한다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도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윤준병 위원 수정의견이 정희용 의원안이지요?

○정희용 위원 이만희 의원님 안.

○소위원장 이원택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정의견이 있잖아요? 이만희 의원, 정희용 의원안이 혼합된 걸로 보여집니다.

수정의견, 9페이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22페이지 조문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정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농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인데 39페이지 수정의견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우측 수정의견 3호를 보면 ‘학계 및 농산물 관련 업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 및 무역업계’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농산물·무역 관련 업계’.

○소위원장 이원택 농산물 관련 업계에서 무역을 넣어 달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44페이지 예시가격 결정 제도인데, 47페이지부터 수정의견이 있네요. 상한가격을 정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1페이지 유통조절명령 심의 의무화 이거는 생산자 요청에 의해서 유통조절을 하기 때문에 의무화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이 5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60페이지 수정의견 하단 쪽에 보면 ‘생산자단체 등에게 계약 이행에 따른’ 뭐 있는데 계약 이행을 빼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수급계획 및 수급 안정 관련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의견은 87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88페이지 수정의견 하단 3항에 가면 ‘시·도가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를 의무조항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만 단서조항으로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외할 수 있다는……

○**소위원장 이원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농업이 별로 많지 않은 데를 말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무조항으로 두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시도에서 수급관리계획을 세우면 그걸 다 모아서 협의·조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수급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세우고 나면 시도에서 다시 이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시도에서 올라온 계획을 가지고 협의·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량이 돼서 어느 것도 올라오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못 세울 수도 있고요.

또 10개 시도에서 해야 되는데 3개 시도에서 하게 되면 나머지 7개 시도는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만드는 수급관리계획이 굉장히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래서 반드시 시도는 세우게 하는 게, 상향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실제로 이게……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가 잘 감이 안 잡히네요.

○**전종덕 위원** 지금 운영하는 형태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걸 꼭 의무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왜냐하면 지금 시도별로 수급관리센터도 설치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품목에 대한 것은 50%만 관리하고 50% 이하를 관리 안 해 버리면 관리 안 한 데서 생산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 버리면 사실 수급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농업인들께서 직접 하셔서 시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의무를 넣어 버리면 자율이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업인은 자율적인데……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예, 말씀해 주세요.

○**윤준병 위원** 이 조항은 어차피 농식품부에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기초에서 만드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일관된 지자체의 하부 계획들이 올라와야 전체적인 국가의 수급계획이 마련될 수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지자체에 그 의무를 부과해서 이행하도록 담보를 해야 전체적인 수급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광역시도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만들지 않으면 정부가 이행력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서조항을 달아서 또 예외로 할 수 있는 걸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 그래도 질문 하나 더 해야……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 문구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맞습니다. 시도에서 수급관리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중앙에서 모아 가지고 올해 혹은 내년에 우리가 어느 품목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될 것이라는 관리계획을 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중앙정부는 혹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판단을 했을 경우에 시도에다가 어떤 의무를 또다시 부여할 권한이 있나요, 중앙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권한 얘기도 있고요.

○**임미애 위원**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협의·조정한다고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적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을 통해서 좀 더 심게 한다든지 모종을 공급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너무 적게 되면 미리 수매 비축을 한다든지 그런 장치들이 여기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게 어디에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90페이지 보시면 조항에 죽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걸 담는 게 수급관리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일단 위와 아래가 원만하게 작동을 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밑에서부터 관리계획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서 실제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모아 놨는데 이건 너무 과잉이야, 혹은 이건 너무나 적어. 지금 사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과잉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중앙정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시도에다가 이것을,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협의는 하지만 그러면 그 시도에서는 면적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면적을 줄일 때 그것이 강제로 하나요? 인센티브를 주든 뭔가 방식이 있어 줘야 되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강제는 안 하고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로 하는 거지 강제로 저희들이 의무로 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 방식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밑에다가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위에는 그러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것이 서로 아귀가 안 맞았을 때 조정해 내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그림이 안 그려져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농안기금 용도에 보시면 저희들이 수급관리계획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죽 넣어 놨습니다. 그게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되고……

○**임미애 위원** 그게 어디에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안기금 용도에 보시면 123페이지부터 이런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 생산·공급 사업이라든지 계약거래 지원,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에서는 제가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고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의무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면 지방에 의무가 주어지는 것만큼 중앙정부는 어떤 재정과 권한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 법안소위에다가 이후에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설명을 저도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수급 계획이나 이런 걸 내라고 했을 때 안 낸 지자체 있어요?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까지는……

○**전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쨌든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중앙 방침을 지자체가 이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 답변 과정에 나

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의 재배면적 강제 감축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농림부가 예를 들어서 강제 감축을 제기하고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모든 제도가, 수급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강제 감축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무를 넣어 놓는 것 자체가, 작년에 논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또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의무로 명시하지 말고 그냥 현행대로 어쨌든 유지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무조항을 넣어 놓으면 강제가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급관리계획에 따라서는 정부가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못 합니다. 다만 작년에 했던 그런 방식들은 양곡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 규정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할 수도 없겠지만 정부가 굳이 한다면 이게 아니라 양곡법이나 직불법에 가야 됩니다. 이 조항으로는 강제를 못 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께서 좀 설명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양곡수급계획은 정부가 하여튼 여기에 포함되는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 품목이나 이런 건 정하잖아요. 정하고 나면 일련의 수급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생산을 조정하거나 또는 소비를 진작하거나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될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은 큰 의미가 있는 계획이고, 이번 농안법의 가격안정제를 비롯해서 수급 조절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각 참여 조직들이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다만 이걸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넣었던 내용이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도 있고 또 시도별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이것도 있고, 그걸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기금 용도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동을 시키면서 대신에 광역지자체장은 당연히 관내에 있는 수급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계획의 하부계획으로 뒷받침하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은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대신에 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전체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조직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국가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운영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는 각기 참여 기관들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이게 수급조절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수급안정계획입니다.

○**전종덕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87페이지 하는 것 아닌가요? 수급계획 맞잖아요. 수급안정계획 아니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수급계획.

○**전종덕 위원** 수급계획이잖아요.

수급계획은 지금까지도 자율적 운영을 했고 또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등 이런 것들을 줘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으면 또 강제적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될 내용이 아닌데 또 강제하고 의무화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두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신뢰 문제나 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시행대로 해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냐, 꼭 의무로 해야 될 문제냐라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저희들이 만약에 시도 통해서 생산자한테 봄배추는 올해 3만ha 심어야 되니까 가지고 오시오 이게 아닙니다. 배추에 대해서는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도에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농업인 대상으로 얼마씩 꼭 심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의미 자체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배추를 심어야 되고 얼마 심을지 의무를 가지고 세우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도는 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얼마 할지는 생산자단체한테 얘기를 들어서 시도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우리한테 내 봐라. 그러면 부족하면 저희가 돈을 투입해서 더 쉽게 하면 됩니다. 남으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농업인들한테 다 손해가 되니까 작목을 전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완전 자율적인 계획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결국 농업인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예를 든다면 양파가 과잉 생산돼서 하락했을 때 우리가 사전 수급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전국 광역시도에서 양파가 얼마큼 생산되는지를 국민소비량 기준으로 해서 알았을 때 적절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광역시도가 자율적으로만 하게 할 거냐, 아니면 광역시도도 생산자단체와 농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태와 현황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를 모아 보니 상당히 과잉이다 또는 상당히 과소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당 광역시도하고 협의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격안정을 이루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자는 거잖아요. 계속 산지 폐기하고 막……

산지 폐기는 사후적 조치잖아요, 돈을 줘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사전에 서로 조정을 하면 서로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자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건 의무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임호선 위원**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전종덕 위원**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다시 한번 확인……

○**임호선 위원** 하여야 한다……

○**소위원장 이원택** ‘광역시도는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뭐 이런 거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시도를 강제할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시도 계획을 먼저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의무를 시도에다 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 쟁점은 다 이해됐으니까 다른 것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이고요. 106페이지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수석전문위원 의견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의견……

○**전종덕 위원** 애초에 이건 거부권 법안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또 거부권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시는 과정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곡법이 지금 이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정가격(기준가격)은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쌀값을 보장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시장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가격도 낮고 소득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투여된 생산비용 플러스 수급조절비용까지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비 플러스알파를 정하기로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수해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고 또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쌀이나 소고기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문제까지 양곡법에서 이쪽으로 옮겨져 왔는데요. 여기서 가격안정을 위해서,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정한 기준마저도 저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안은 양곡법과 농안법에 제출됐던 공정가격(기준가격), 평년가격 플러스 생산비 플러스 수급 조절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이렇게 가격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장님, 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소위원장 이원택**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짧게 말하려고 말이 좀 빠르고요.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이것은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공정가격에 찬성하고요. 이재명 정부도 여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의 문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가격의 의미는 뭐냐 하면 생산비 플러스 시장가격 플

러스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가격이 낮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시장가격이 높으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가격의 의미는 생산자나 유통인이나 소비자가 합의한 가격입니다, 이 정도면 오케이. 그래서 그 가격은 생산자가 정할 수도 없고 소비자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정할 수 없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공정가격이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커피같이, 어린애들 동원해서 하루에 1달러 주면서 커피를 따게 합니다. 그런데 10달러 줘야 되는데 1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안 사겠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같이, 커피가 그렇습니다. 다국적기업 업체는 1kg당 100원에 팝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1원에 가지고 옵니다. 봤더니 이 다국적 업체들이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이 지금 활성화돼 있고요. 외국에서는 공정무역을 가격으로 보장하지는 않고 인증을 합니다. ‘이 제품은 공정가격 제품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걸 사십시오’ 해서 그런 걸 보장하는데 문제는 농업분야에서 어떻게 이걸 실행할 거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처럼 생산비 등 플러스 다 해서 농업인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건 찬성은 하지만 사실 실행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정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가격안정보장제입니다, 최저가보장제. 둘째는 미국에 있는 PLC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가격만으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불제라든지 수입안정보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치를 하냐 하면 농업인들이 중간에 착취를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매를 하거나 계약재배를 하거나 도매시장을 계약하거나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농외소득, 지금 저희 농가소득이 5000만 원이지만 농외소득은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다양화시켜서 공정가격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서 이런 공정가격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믹스해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전종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농산물 하나에 대해서 모든 가격을 생활까지 가능한 걸 엿는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의라든지 수단 면에서 굉장히 도입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일단 말씀하시는 후속적 조치 이것은 그것대로 정책을 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 우리 농민들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공정가격(기준가격) 이건 생산비가 반영…… 사실 농업외소득으로 그렇게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농업소득 1000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 농사지어서 먹고살 수 있는 것을 맞춰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특히 양곡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소득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가격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거부권 행사되기 전에 논의할 때 공정가격(기준가격)의

정의를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평년가격 플러스 생산비 플러스알파 이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은 생산비가 경영비 플러스 내급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경영비 플러스 자가노동비예요. 이것만 반영된 거면 생산비 전체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산비 반영도 안 돼 있고 평년가격이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후퇴입니다. 약속했던 것을 이렇게 후퇴시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함께 약속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출된 법안, 제출된 양곡법 법안이 이렇게 기준가격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로 정한다는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퇴안을 갖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이 내용은 당연히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거부권 행사 법안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공정가격(기준가격)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또……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요즘 고민이 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사지어서 농업소득만으로 우리가 먹고사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오히려 되짚어 봅니다. 농사지어서 농업소득만으로 먹고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미 유럽에서도 그리고 소위 농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각국의 나라에서도 굳이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는 사값값이 벌써 몇 년째 한 알에 1만 원이 넘어가니까 우리도 사과 먹어 보고 싶다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분야는 농민의 관점에서 이들의 농업소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법도 정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만으로 먹고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농산물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져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훨씬 더 비싸졌을 때 이 부담을 그러면 누가 부담할 것인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차관께서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일정 동의합니다. 전종덕 위원님의 삶을 유지 가능한 가격이 공정가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에 일정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농업소득만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한 가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농민들의 삶을 채워야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지금 농안법도 논의를 하는 거고 양곡관리법도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안이 후퇴되었다라는 얘기에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이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법안을 심사할 때 세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50%까지 올리려면 그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이 부분은 다른 것 다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논의하시지요. 진도 안 나가니까 이것 진도 나간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종덕 위원** 아니, 저……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반복적인 얘기 아니면…… 반복적인 건가요?

○**전종덕 위원** 그래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소득으로 먹고사는 게 정상인데 지금 현재 여러 구조에서 농업소득으로 먹고살기 어려운 구조인 건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농업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책과, 예산도 많이 투여하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준가격대로 하게 되면요 지금도 부족한 농업소득을 더 깎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출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합의했던 그 안보다 더 후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에 반론을 폐지 마시고……

○**전종덕 위원** 아니, 반론을 편 것보다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계속 주고받고 토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반론 폐지 마시고 아까 두 차례 주장했던 것과 다른 주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쟁점을.

마무리해 주세요.

○**전종덕 위원** 마무리하면 더 이상 후퇴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농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거다 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이 문제, 농산물 가격 가지고 지금 농가소득 문제까지 전반에 걸쳐서 소득 정책을 커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가격 정책과 소득 정책을 겸비해 가지고 정책 수단을 강구해서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 정책만으로 어떤 농사를 짓든 충분히 농가소득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는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 혹시 이게 현장 농업인들한테 잘못 전달되면 가격지지 정책만으로 소득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냉정하게, 앞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인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산물 가격안정 이걸로 농가소득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듣고 이건 쟁점 조항이니까 나머지 심사 끝내고 마지막에 또 토론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물론 가격 가지고 모든 농가소득의 전부를 커버할 수 없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스텐스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드리고 싶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가격은 시장가격이지요, 시장가격. 뭘 공정가격이에요? 공정가격이라는 말 속에는 생산비를 포함한 적정한 이윤이 포함된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강하게 내정돼 있는 것 같은데 시장가격을

마치 그냥 공정가격이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그 격차가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범위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공정하게 보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농안법 기본적인 입장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잠깐만, 지금 해명을 좀 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가격은 수요, 공급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의향이 만나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정희용 간사께서 12시까지 심사를 마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1페이지 뒤 조항부터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 설치 등인데요. 조문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 118까지 있네요.

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이런 것도 분류가 돼서 나왔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19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추가 관련해서요 수정의견이 122, 123, 124, 125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에 수산발전기금을 별도로 두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집행되도록이요, 예산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26페이지 수입비축사업의 사후관리는 129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1년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해수부는 단서조항으로 3년 정도, 용역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좀 길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서정호** 예.

○**소위원장 이원택** 3년이면 좀 긴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서정호** 저희가 지금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나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한 십여 년간 추진하면서 각종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는데 수산물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고, 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각종 어업단체들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의 유예 시간이 저희로서는 실무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용역을 하려면 사계절은 해야 되니까 무조건 1년은 가야 될 것 같

고 등등 이런 거니까 위원님들 3년……

농식품부는 1년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가격안정제로 돌아와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론 쟁점을 좁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부권을 당했던 2차 법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에 보면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확한 워딩입니다, 이건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여기 법안의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 법안의 평년가격은 직전 5년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하고요.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전종덕 위원님, 말씀드리면 여기에 물가상승률 이런 건 없어요.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대화에 혼선이 되니까. 나도 물가상승률 그때 반영했나 해 가지고……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니 있었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된 것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게 비교 대상의 2차 거부권 법안의 대안이지요. 그때 비교 대상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수석님이랑 이렇게 해서 만약에 2차 법안대로 가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공정가격이든 기준가격이 나왔을 때 이 가격하고 뭐하고 차액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액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당해 연도 평균가격하고 5년간 평균가격하고 아까 생산비 등을 고려했을 때 차액이 발생했을 때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당해 연도 평균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말씀하신 평균가격과 개념이 다릅니다. 당해 연도 평균가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추는 한 3개월 거래되면 그 평균가격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것은 기준가격을 정할 때 생산비 이런 게 아니라 5년간의 가격을 가지고 평균을 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쟁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차액 지원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평균가격이 있고 5년간 평균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생산비 등을 고려해서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기준가격을 정하게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왔을 때 차액 지원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해 놓은 것은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기초로 해서 기준가격은 자가노동비 플러스 경영비지요? 경영비 등을 고려해서 기준가격을 정하면 거기에서 차액을 말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 둘 중에 만약에 무엇이 더, 예를 든다면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영비는 제일 낮고요 그다음에 좀 높은 게 생산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높은 게 시장가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차액을 해 주면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차액이 높아지고요. 경영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차액이 좀 낮아진다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평균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는 해당 연도만 평균가격에 반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것을 해당 연도만으로 볼 것인가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평년가격은 가락시장의 배추를 하면 오늘도 가격이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다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가락시장에 가면 배추는 매일 거래됩니다, 일요일 빼고는. 그래서 그중에 어떤 걸 쓸 것이냐 할 때 작기에 거래되는 가격의 평균가격이 당해 연도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건 기준가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전 법률은 기준가격을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도록 했었습니다. 약간 그 의미 차이는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개념은 이제 정리가 됐는데 기준가격은 경영비와 자가노동비가 포함된 거고, 그러면 평균가격을 거래가격, 수확기 산지가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한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확기 산지가격, 거래가격 이게 당해 연도만을 기준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직전 몇 년의 평균가격을 같이 고려할 것이냐 이게 아마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매년 발동하기 때문에 매년 다시 정해야 됩니다. 매년 가격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여기서 핵심은 기준가격 아닙니까? 기준가격에 저희가 생산비용을 보전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수급 조절이 나온 거고.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된 수정안에는 기준가격이 경영비 플러스 자가노동비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생산에 필요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감안을 하는 것이 생산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축소된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토지임차료도 주고 금융비도 다 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전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게 생산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비가 다 반영되는 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합의했던 공정가격(기준가격)의 기준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예요, 문구는. 원래 5년 평균가격이 기준……

○전종덕 위원 생산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문구를 그대로 보면 5년 평균가격을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생산비하고 수급상황을 고려하는, 수급상황은 가격 결정 요소는 아니니까 생산비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전종덕 위원 지금 여기 기준가격에는 생산비가 오롯이 반영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전종덕 위원님 경영비 및 자가노동비 등 이렇게 하는 내용이 생산비를 보전 못 했다 하는 지적이니까 저는 예전에 있던 내용을 원용해서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우려하고 있는 내용, 뭐는 들어가고 뭐는 빼고 이렇게 하는 내용보다는 그렇게 해서 지금 빠졌다고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이만희 위원 ‘생산비 및’ 뭐요?

○윤준병 위원 예전에 됐던 내용,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질문인데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해서 경영비라고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비하고 경영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비에다가 토지용역비, 토지 1억짜리면 여기서 은행에 맡기면 돈이 나올 겁니다. 그게 토지용역비입니다. 그렇고 자본용역비, 내가 이걸 은행에 넣어 놓으면 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토지용역비랑 자본용역비를 경비에다가 더 포함하면 생산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경영비는 직접 농업인들이 돈을 쓴 경우, 내 현금 나간 경우 전부 경영비입니다. 그런데 토지용역비나 자본용역비는 내 돈 나간 게 아니라 예전에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투자는 했기 때문에 사실 비용은 맞습니다. 기회비용 개념이라서 저희들은 농업인들께서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다 지원해 드리겠다고 해서 경영비에다가 노동비, 내가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거기까지는 포함시켜 드리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노동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12시가 얼마 안 남아서 두 분 하고 안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난번 거부권 법안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농림부에서도 생산비 책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림부에서 준 자료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미 포함하고 있는 생산비의 내역을 우리가 굳이 수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작년의 거부권 법안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건 양곡법이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격(기준가격), 작년 거부권 법안대로 똑같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임미애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것 보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 제가 차관님, 수석전문위원님께 동시에 질문인데 여기에 또 하나 쟁점이 뭐냐 하면 최근 5년간의 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 부분하고 당해 연도 평균가격이잖아요?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의견으로 당해 연도 평균가격에다가 기준가격에서 나오는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지금 기존 법안에는 당해 연도 평균가격에다가 5년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생산비, 수급상황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평균 가격하고 당해 연도 평균가격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게 예전 법안은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5년간 가격을, 그 당시 평균가격은 기준가격을 설정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년 중에서 최저·최하를 빼고 3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격을 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가격 기준이 없고요.

다만 경영비를 할 때는 평균가격을 뺏습니다. 왜냐하면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해 연도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영비를 평균화하게 되면 경영비가 낮아져 가지고 오히려 농업인들이 보호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을 설정할 때 올해 시점의 경영비를 한 거고요. 만약에 평균경영비를 하게 되면 경영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산비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서 생산비 개념 중에 경영비 정리할게요. 경영비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종자비, 무기질비료비, 유기질비료비, 농약비, 수도·광열비, 기타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 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리·유지비, 기타요금, 농기계·시설임차료, 토지임차료, 위탁영농비, 고용노동비 이게 다 들어가는 게 경영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전종덕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비추어 본다면 경영비라는 용어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그 대신 만약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이렇게 일부에서 생기고 문제 제기가 있으니 이것의 문구를 조정해야 된다

라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영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면서 우리 농가들 농민들의 여러 가지 더 나은 미래의 소득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준가격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넣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여 경영비, 자가노동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생산비 중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예전에 생산비용이라고 용어를 사용했는데 다른 용어를 쓰면서 나타나는 후퇴에 대한 걱정이 내용이 있다고 우려하시니 저는 경영비, 자가노동비 이 내용을 빼고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이렇게 그냥 문구를 포함시키면……

지금 생산비용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칫 예전에 사용됐던 생산비용에서 일부를 누락시키고 가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오히려 앞에 ‘경영비, 자가노동비 등’ 이렇게 하는 내용을 빼고 그냥 예전에 썼던 용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이것을 기준가격으로 보자 이 내용으로 수정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정희용 위원님 하시고 임미애 위원 하시고 전종덕 위원 하시고 확정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가격안정제도 도입 여부와 이 내용을 정하는 게 이 법안의 가장 핵심 조항인데 지금 전종덕 위원님도 이견이 계시고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다른 제안을 하시고 해서 법안소위를 추후에 다시 열어서 충분하게 숙의하시지요, 그렇게 이견이 많으신데.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 부분만 이견이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비라는 이 단어를 쓰려면 아까 차관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토지용역비 플러스 자본용역비가 들어갑니다.

토지용역비는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토지와 자본용역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둘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생산비의 개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자료가 아니고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비로 할 것이냐 경영비로 할 것이냐, 혹은 생산비로 하더라도 직접생산비로만 할 것이냐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사족 같지만 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방금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직접생산비를 기본으로 하고, 왜냐하면 자가노동비

플러스 경영비가 직접생산비입니다. 생산비를 써야 한다면 직접생산비를 하고 나서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간접생산비도 보장하는 것은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반대하고요.

저 발언시간이니까 할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림부가 정한 생산비 비용기준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토지도 그리고 자본용역비도 다 생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 대출받아서 아니면 빚을 내 가지고 농사에 필요한 비용이 다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농림부가 정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우리가 굳이 하라고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평균가격하고 평년가격에 있어서도 내용을 좀 더, 자료도 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거부권 법안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곡법에서 이관됐던 공정가격(기준가격) 명칭과 그 내용, 기준을 그대로 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계속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시니까 스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윤준병 위원께서 수정한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은 직접생산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잘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대통령령은 법령을 위반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생산비 범위 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생산비가 기회비용에 입각한 생산비냐 직접, 실제 생산비냐……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생산비 범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생산비가 100이면 100을 다 지원할 거냐 80을 지원할 거냐 70을 지원할 거냐 50을 지원할 거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예전에 피해보전직불제 할 때 수입기여도가 문제가 됐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런데 차액은 명확해야 하고요. 정부 마음대로 차액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비와 기준가격의 차이,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 그리고 경영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생산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정부가 구속이 되는 거고요. 그게 왔을 때 80% 할 건지 100% 할 건지는 농림부장관이 시행령에 따라서 재량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냥 그것까지 결정해서 차액을 정하자고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비 할 건지 간접생산비 할 건지는 명확하게 정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 얼마 차이 날 건지는 재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 생산비에는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는 이 부분은 농식품부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이것을, 굳이 입법화하면서 농민들이 후퇴했다는 인식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도 입법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소 고충이 있겠지만. 그래서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이 문안을 그냥 받아서 입법화했으면 좋겠어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위원장 이원택 저희가 농어업재해대책법 볼 때도 거기에 ‘생산비 또는 재해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생산비가 비용이 올라가니까 차액이 커질 수 있다, 재정부담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잖아요. 재정부담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 저는 재정부담 걱정은 아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차액 비율을 조정해서 생산비와 경영비 차이를 정부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지만 기준점을 생산비와 평균가격의 차이를 둘 거냐, 직접생산비냐 총생산비냐 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규정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것이 시행령으로 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대통령령하고 예산의 범위 내니까 법안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전종덕 위원 그게 총생산비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법안에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나중에 차액 비율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70% 했는데 생산비를 고려하면서 5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께서 가격 조정을 하라고 했더니……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이것 수용해 주세요, 그냥.

○윤준병 위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정희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여당하고 정부하고 입장이 다른데 이렇게……

조금 더 숙의를 하십시오. 이것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종덕 위원 더 숙의하시지요.

○김선교 위원 그것 당정 협의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요……

○**강명구 위원** 숙의하시지요.

○**정희용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정부에서……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결정,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종덕 위원** 더 숙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평년가격하고 당해 연도 평균가격 이것도 따로 봐야 된다니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 계속하시는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법적으로는 말씀드렸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4시에 전체회의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윤준병 위원** 아니, 여기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충분히 위원님들 우려사항을 들었고요. 지금 농업인들께서 힘드시니까 일단 생산비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희용 위원** 차관님 입장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밀려서 할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시고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시행을 해야 되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이나 현장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고요. 사실 저희들은 재정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농업인이나 현장을 생각한다면 생산비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윤준병 위원** 그렇게 받으면 됐어요.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생산비 받았으면 쟁점 해소됐잖아요.

○**전종덕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문구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아니, 좀 바뀌었잖아요. 여기 지금……

○**전종덕 위원** 아니, 정확히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안을 작성한 것에서 윤준병 위원 수정안이 그것 아닙니까? 106페이지 기준가격에 보면 ‘기준가격(경영비, 자가노동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데 이것을 삭제하라는 거지요? ‘기준가격(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 괄호 안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 명칭도 검토해 주십시오, 명칭.

○**소위원장 이원택** 뭐요?

○**전종덕 위원** 공정가격 포함……

○**소위원장 이원택** 공정가격 수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 공정가격은 지난번에도 거부권, 이미 본회의를 통과된 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것은 뭐……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공정가격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것은 반대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 반대했지요, 다.

○문금주 위원 저도 반대했어요.

○임미애 위원 진보당에서 공정가격을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겁니다.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 진보당이.

저는 공정가격이라는 말이 정말 필요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가격에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굳이 들이대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법이 마치 완벽한 것처럼 대중들을 호도해 나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책임감 있는 발언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가격 절대 반대합니다.

○전종덕 위원 개념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개념은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적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적정하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공정가격을 포함할 때 농민들의 생산비 보전하고 땀의 가치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공정가격을 담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본회의까지 통과된 내용이에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때……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 자체가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공정가격이냐 기준가격이냐 논쟁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공정가격이라는 용어 이퀄 기준가격이라 생각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전종덕 위원 이미 통과된 법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확립된 개념이 없고요.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종덕 위원 기준가격은 뭐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기준가격은 일반적인……

○전종덕 위원 의미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의미를 포함했지 않습니까? 공정가격이라는 것은 생산비를 포함해서 수급…… 저희가 받았잖아요. 수급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 것이 공정가격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할 수 없다라는 것 저는 그게 동의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과정을 밟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뭘 받는다는 뜻인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공정가격이라는 말은 지금 삭제하는 거지요. 기준가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전종덕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

장님? 아니, 공정가격이 이미 통과된 내용을, 이미 거부권 법안.....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거는 거부가 돼서 다시 심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권 법안을 다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요, 아니요.....

○**전종덕 위원** 농업 민생 3법 계속 이렇게 후퇴하실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거부권 법안을 지금 수정한 것이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2차 법안을 가지고 수정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전종덕 위원** 수정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수정을 하면서 핵심적 내용을 유지하면서 수정할 것 수정하는 거라니까요.

○**전종덕 위원** 아니, 기본 취지가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후퇴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의하는 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 저는 제가 생산한 농산물이 정말 수천만 원을 줘도 공정하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 늘하시는 이야기 있습니다. 정말 피와 땀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농사지었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내가 가격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시장에 그 가격을 맡겨야 되는 상황을 저희는 늘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정하게 평균가격 내지는 노동비를 포함하면 그것이 마치 공정한 것처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해하고 호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는 법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양곡수급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정가격이라는 근거는 개념 정리는 했습니다, 정의조항에. 포함한 내용을 지금 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충분히 들었습니다.

○**전종덕 위원** 계속 이렇게 강행하실 겁니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있는 분들이 충분히 쟁점 알아듣고 각자의 주장도 갖고 있으니까.....

○**전종덕 위원** 그러면 논의를 더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사실은 법안소위에서는 일부의 이견만 있더라도 숙의 절차를 이어 나가는 것이 국회 정신이고 법안소위 정신입니다.

○**전종덕 위원** 당연히 더 논의해야지요. 지난번에 논의해서 통과했던 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용 위원** 과거에 민주당에서 계속 이것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숙의 정신이 다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견 있으면 더 논의를 하세요.

○전종덕 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 강행하실 거예요? 그때 같이 합의했던 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달라지신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것은 단어의 표현 문제잖아요, 표현 문제. 핵심적 내용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표현 문제 가지고……

○전종덕 위원 그거를 왜 반영 못 하냐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 표현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그때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했고 내용은, 기준은 분명히 같이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당 되니까 입장이 바뀐 것이에요? 왜 자꾸 후퇴를 하십니까? 지난번 법안대로 해야지 왜 후퇴를 하시냐고요?

○임호선 위원 이건 후퇴는 아니잖아요. 내용 들여다보면 후퇴가 아닌데 자꾸 후퇴라는 말을 써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7항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 반대합니다.

○임호선 위원 반대하세요. 생산비가 들어갔는데 후퇴가 아니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 안건 등에 대해 이의가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전종덕 위원 반대합니다.

○정희용 위원 저희 국민의힘은 좀 더 숙의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재석 위원 수 총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윤준병 이만희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정책기획관 김정주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서정호